

#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PT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하여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11개 단체 중 PT심의를 통해 최종 8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24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PT심의
- 심의일정 : 2024. 3.11.(월)
- 심의위원 : 내외부 전문가 5인 (\*가나다순)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고원석	독립큐레이터, 전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2	박영택	경기대학교 미술경영전공 교수
3	양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수
4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5	조소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장

##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지표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구성, 성과 등 공모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li> <li>○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li> </ul>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의 안정성</li> <li>○ 프로그램 내·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li> <li>○ 아트페어의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사업의 연속 가능성</li> </ul>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프로그램 기획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의 적절성·합리성·구체성</li> <li>○ 기획의 차별성·참신성</li> <li>○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li> </ul>
	재원 활용 계획의 적절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 재원조성 계획의 수립 정도 및 현실가능성</li> </ul>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이 해당 아트페어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li> <li>○ 국내 미술시장에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정도</li> <li>○ 사업 효과의 공공성</li> </ul>	

## ☐ 선정결과 : 총 8개 단체 선정

연번	아트페어명	지원단체명
1	옴 비주얼 (OOP) 아트 페스티벌	주식회사 악수
2	Kiaf SEOUL 2024 (한국국제아트페어)	(사)한국화랑협회
3	MESS:SEOUL 2024 VOL.1	주식회사 나인앤드
4	2024 더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	신한카드주식회사
5	2024 연희아트페어	아터테인
6	Diaf 2024	사단법인 대구화랑협회
7	2024BAMA 제13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8	아트부산 2024 ART BUSAN 2024	아트쇼부산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순번순

### ○ PT심의 총평

- 전체적으로 페어의 규모나 조직적 측면에서 편차가 컸다.
- 지원신청의 대상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유사한 구성이나 패턴을 보여서 아쉬움이 있었다.
- 유사한 사업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항목 구성 및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지원사업의 취지상 지원금액의 지출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일부 항목상 지원금액이 아트페어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기관에서 협의하여 조정·수정하여 아트페어의 부대행사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교부조건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선정단체 의무사항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구체화 및 예산조정 필수
- 사업변경 시(예산 변경, 행사기간 변경 등) 센터와 사전협의 필수
-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른 보조금 집행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개인에게 사례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 필수
  - 부가가치세 지원금 사용 불가 등

- 집행증빙자료 준수
- e나라도움 교육(온라인\_이론 1회 4시간, 오프라인\_실습 2회 6시간) 수료증 제출
- 아트페어 방문객 설문조사 진행 협조
  - 센터가 별도 용역을 운영하며, 지원단체에서 별도 예산 책정 불필요
  -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실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스 제공 등 적극 협조 필수
  - 국제아트페어의 경우 등 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방문객 조사 포함 협조 필수
  -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아트페어 별 구매자 특성 및 페어별 티켓 소비자 분석, 만족도 정보 개별 제공 예정
- 사업평가 협조 및 전체 아트페어에 대한 성과(판매액, 관람객 수 등) 및 요청 정보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관람객, 매출액, 작품판매 등)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연구 자료로 활용
- 「2024 미술시장조사」 응답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사업운영인력 전원 해당)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아트페어 현장운영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로 제한됨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 유의사항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내용(과거 유사 사업 성과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이 확정되었다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시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2,000만원 이상 계약 건 누리장터 입찰 필수 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2.27.)에 의거하여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외부기획자와 단체 대표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전문가 사례비 지원 불가함

○ 단체 내부 인력에 인건비, 전문가 사례비 지원 불가함

○ 본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

☐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4년 3월 중

☐ **관련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708-2254/ lhmffj@gokams.or.kr